

코로나19 대응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적용기간 재연장

I 특별조치 적용기간 재연장

- ▶ 일학습병행 특별조치 중 '21.6.30.로 적용기간 종료'가 도래하는 조치사항*에 대하여 적용기간 6개월 연장 추진(21.12월말까지 연장)

* 학습기업 훈련대상 확대(입직기간 1년→2년, 상시근로자 수 25%→40%)

1. 학습기업 훈련대상 확대

내용

특별조치 이전	특별조치 이후
입직 1년 이내, 상시근로자 25% 이내	입직 2년 이내, 상시근로자 40% 이내 (재직·재학 동시실시는 50%까지 가능)

적용기간 연장 방안

※ 동 특별조치 내용 변경 없이 적용기간만 연장

현 행(특별조치)	기간 연장
훈련시작일이 '20. 6. 15.~'21. 6. 30.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과정(재학단계, 과정연계 포함)	훈련시작일이 '20. 6. 15.~'21. 12. 31. 기간 내 해당하는 모든 과정(재학단계, 과정연계 포함)

2. 훈련장려금 지원규모 확대

내용

특별조치 이전	특별조치 이후
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장려금 월 20만원 (도제의 경우 월 30만원)	학습근로자 1인당 훈련장려금 월 40만원 (재직, 재학단계 공통 적용)

※ 외부평가 연계성과금(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'전체 훈련기간(월)×20만원')은 기존과 동일

적용기간 연장 방안

※ 기 조치사항 변동 없음

현 행(특별조치)	기간 연장
'20. 6. 15.~'21. 12. 31.기간 내 훈련 중인 모든 과정에 대하여 '20. 6월~'21. 12월 훈련분 적용(재학단계 포함)	변동 없음 (재연장 여부는 '21년 말에 별도 검토 후 결정)

3. 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 상향

내용

- 기존 과정개발 지원정도와 관계없이 기업당 최대 2개 직무까지 추가지원 적용(1개 직무당 훈련과정 개발비 등 210만원 지원)

적용기간 연장 방안

※ 동 특별조치 종료, '21년 과정개발 기본계획 적용

현 행(특별조치)	변 경
기업당 최대 4개 직무	기업당 최대 4개 직무(변경 없음)
'20. 6. 15.~'21. 6. 30. 기간 내 신규 훈련과정개발 및 훈련 시작한 과정에 한해 기업당 최대 2개 직무까지 추가지원	▪ 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 상향조치는 종료 ▪ 훈련과정 개발 지원한도는 기 시행한 「'21년 일학습병행과정 개발·심사 지원 기본계획」 (일학습과정개발센터-132, 2021.01.12)에 따라 모든 학습 기업의 지원한도 4개 직무 적용